군포도시공사 제1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」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희

2021년 1월 21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63호

군포도시공사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

군포도시공사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의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근무성적 평정자는 업무직근로자 소속 부서의 팀장과 부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본부장으로 한다.

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공사 취업규정 제28조를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연차저축에 의한 연차 발생 기준연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영기획부장 이 현 동
	직 위 성 명	경영전략팀장 박 인 희
	담당자 성명 (전 화)	이 태 권 (390-7615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의2(근무성적 평정) ①~③ <생략> ④근무성적 평정자는 업무직근로자 소속 부서의 팀장(경영기획부는 부장)과 부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본부장으로 한다. ⑤~⑥ <생략>	제20조의2(근무성적 평정) ①~③ <현행과 같음> ④---------- 팀장과 부장 ----------. ⑤~⑥ <현행과 같음>
제22조(연차유급휴가) ①연차유급휴가의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, 공사에 근무한 경력에 한한다. ②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. ③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. ④3년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마다 1일을 가산하고 휴가일수의 한도를 25일로 한다. ⑤연차휴가 계산기간 및 표기하지 않은 사항은 「근로기준법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⑥연차휴가의 계산에 있어 유급휴일 및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, 병가의 경우에는 월간 2일, 연간 7일의 기간내에서 출근한 것으로 본다. ⑦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기간이 종료하는 당해연도 말에 소멸된다. 다만,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제22조(연차유급휴가) 공사 취업규정 제28조를 준용한다.